진술서(피의자)

사　　건　　[○○]경찰서 [2026-○○○○○○]호(접수번호) [죄명]

진 술 인　　[이름](피의자)

[주민등록번호]

[주소]

[연락처]

[혐의를 인정하는 경우]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사건의 피의자 [이름]입니다. 저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사건을 장기화하고 싶지 않습니다. 검사님과 수사관님께서 이 사건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전후 사정에 대하여 검사님께서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을 나름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

아래 진술 중 다소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, 그 취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당시의 제 관점을 서술하기 위한 것일 뿐, 현재 혐의를 인정하며, 제가 행한 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

[설명]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는 대목은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. 위 문장을 서술 앞에 두면 그 대목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한 설명으로 읽힙니다.

[혐의를 다투는 경우]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사건의 피의자 [이름]입니다. 검사님과 수사관님께서 이 사건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전후 사정에 대하여 검사님께서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을 나름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

[설명] 두 도입 가운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합니다.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'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사건을 장기화하고 싶지 않습니다'라는 문장과 위 유보 문장을 남기면 혐의를 인정한 진술로 읽힙니다.

[설명]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(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). 진술서에 적은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아 이후 절차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, 제출 여부와 적을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.

[2026. ○. ○.]

저는 [○○:○○경] [장소]에서 [상대방 이름]을 만났습니다. 당시 [상대방 이름]은 [구체적인 말과 행동]하였고, 저는 [구체적인 말과 행동]하였습니다. 그 뒤 저는 [○○:○○경] [구체적인 말과 행동]하였습니다.

[설명] 날짜를 한 줄에 따로 세우고 그 아래에 그날의 일을 적습니다. 시각이 중요하면 '09:10경'과 같이 문장 안에 적습니다.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일, 기억하는 일과 짐작하는 일은 문장에서 구분합니다.

[2026. ○. ○.]

[다음 날짜에 있었던 일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.]

[설명]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서의 사실관계와 진술서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대조합니다. 두 서면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어느 쪽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[혐의를 인정하는 경우] 저는 이 일로 [피해자 이름]께 [피해의 내용]을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저는 [2026. ○. ○.] [피해자 이름]께 [사과,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한 일]하였습니다.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.

[혐의를 다투는 경우] 저는 [다투는 행위]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. 다만 이 일로 [상대방 이름]이 겪은 [불편 또는 피해]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

[설명] 사과, 피해 변제,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한 일은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여 적고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. 범행 후의 정황은 공소제기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(형법 제51조 제4호, 형사소송법 제247조).

첨부자료

1. [사과문, 송금 내역, 합의서 등] 1부

2. [대화 내용 캡처 등] 1부

[2026. ○. ○.]

진술인 [이름] (인)

[○○]경찰서 귀중

[설명]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사건 줄을 공소청의 사건번호로, 수신을 '[○○]지방공소청 귀중'으로 바꿉니다.

위 서식은 변호사 한동하가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. 해당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.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후의 형사 관련법의 동향과 새로운 판결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